

제188회 거창군의회 정례회
(제3차 본회의)

2012. 12. 21.(금)

조례안 심사 보고서

산업건설위원회

거창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2. 11. 16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2. 11. 19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2. 12. 14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「농어촌정비법」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「농어촌정비법」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을 정비함
(안 제2조, 제3조, 제4조)
 - (1) 법 제2조제4호 ⇒ 제2조제6호
 - (2) 법 제108조 ⇒ 제126조
- 용어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순화함
(안 제5조, 6조, 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)
 - (1) ~규정에 의한 ⇒ ~에 따른 (2) 당해 ⇒ 해당

- (3) 각호의 1 ⇒ 각 호의 어느 하나 (4) 자 ⇒ 사람
 (5) 지역안, 범위안 ⇒ 지역, 범위 (6) 인 ⇒ 명
 (7) 기타 ⇒ 그 밖에 (8) 월 ⇒ 개월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본 개정 조례안은 「농어촌정비법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근거하고 있는 관련법 조항을 개정된 법에 맞게 인용하고,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서
- 나. 검토 결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, 관련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8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